

중재 판정 사례 ⑦

자료제공 / 대한상사중재원

1.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설계변경에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품 목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신청금액	1,983,300,000원	중재비용: 15,588,150원
신청일	2003. 11. 7.	
판정일	2004. 6. 3.	
처리기간	199일	
판정금액	0원	

① 사건개요

A는 B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997. 12. 31. 내역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물량내역서에 오류(터널 섬유보강재의 단

위가 설계도면에는 Ton으로 기재된 반면 물량내역서에는 m³로 기재)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실정보고 및 재경부 질의 회신 등의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B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중재를 신청했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섬유보강재의 단위기재오류를 사유로 하여 실제로 설계가 변경됨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부분 계약금액조정신청은 이유없고, B가 이 사건 입찰에서 잘못된 설계금액을 제시하여 A로 하여금 저가투찰을 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게 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단가 산출서는 A에게 제공되는 서류가 아니고 B가 A에게 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B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A의 저가입찰행위가 “상대방의 유인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이므로 이 사

건 계약 중 이 사건 신청에 관련된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A의 이 사건 투찰금액의 결정은 그 소요공사비, 각종경비, 이익금 등을 고려하는 외에 낙찰가능성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A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구분	내용	비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	
품목	열공급 배관망 건설공사	
신청금액	1,677,825,044원	중재비용: 14,808,037원
신청일	2003. 12. 4.	
판정일	2004. 10. 20.	
처리기간	321일	
판정금액	437,560,000원	

① 사건개요

B는 ○○공단 열공급 확대사업 배관망 건설공사를 시행한 원수급인이고, A는 B와 이 사건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수행한 하수급인이다.

B는 2002. 8. 19. 이 사건 하도급공사 입찰에서 125억원을 투찰한 A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였다. A가 위 입찰에서 최저가투찰자로 선정되자 B는 2002. 8. 17. 1차 협의를 하면서 업무 범위에 대한 조정에 따라 견적 가격에서 약 17억원을 감액한 약 108억원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여 그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A는 2002. 10. 23. B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2. 10. 11.부터 2003. 9. 15. 까지,

계약금액 10,890,000원, 공사대금은 월 1회 지급, 설계 변경으로 인한 대금조정 및 지급은 계약서에 의한다는 것 등을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공사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여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대금을 요청한 바 B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여 발생한 분쟁이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일을 완성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정액도급계약이므로 투입된 노무와 지출된 비용이 처음에 약정하였던 정액 금액보다 많다고 할지라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당사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그러한 정액대금을 받고서 일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한다면 도급 계약금액의 증액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쟁점은 실제 공사현장상황이 계약시 전제되고 명시된 상태인지의 여부 및 그와 같은 상태임을 계약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양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입증자료를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사현장은 A로서는 당초 설계도서와는 판이한 상태의 자연환경으로서 계약 당시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추가된 공사비는 당초 계약상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B가 압 파쇄비용, 흙막이 가시설비용, 도로포장 복구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A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판정하였다.

3.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품 목	철도차량기지 건축공사	
신청금액	4,811,652,431원	중재비용: 31,144,088원
신청일	2003. 12. 22.	
판정일	2004. 6. 14.	
처리기간	175일	
판정금액	399,858,377원	

① 사건개요

A와 B는 ××철도차량기지 건설공사에 관하여 입찰(2001. 12. 27)을 통하여 계약금액 109,260,000,000원, 공사기간 2002. 1. 11. ~ 2004. 3. 31. 로 하는 공사도급계약(계약비계약)을 체결한 후 공법변경, 현장상이 등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B의 요구대로 변경계약을 체결(계약금액 12,640,000,000원 증액, 2002. 12. 27.)하고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이견은 제3기관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다. A는 위 변경계약 체결시 A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공법변경 및 누락자재 등의 추가공사비, 돌관공사비의 청구와 B가 자폐 감사결과를 이유로 삭감한 공사비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발생한 분쟁이다.

①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차 변경 계약시까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가 분쟁해결의 해당조항이었으나 제2차 변경계약에 이르러서는 공사계약특수조건(Ⅲ)에서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중재신청은 이와 같은 당사자 간의 전속적인 중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B의 자체감사에 지적되어 감액된 공사비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있어 물량내역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작성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이 발주처인 V에게 있고 이 사건 공사금액이나 규모를 고려하면 20일에 불과한 설계서 등의 검토기간 내에 그 방대한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수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대조,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시했다. 휴일 및 동절기 작업에 대한 추가 공사비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파일을 설치하는 공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어 A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공기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므로 B가 이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정하였고, 파일항타공법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B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변경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인용하였으며 휴일 및 동절기 작업에 대한 추가공사비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50%로 정하여 신청인의 신청금액 중 83%에 해당하는 3,990,858,377원을 인용하여 판정하였다. ●



건강
상식

숙취 해소법은 나라마다 천차만별

- 러시아: 오이나 토마토를 절인 소금물을 마신다.
- 프랑스: 진하고 따끈따끈한 양파 수프를 마신다.
- 스위스: 박하를 탄 브랜드를 조금 마신다.

- 몽골: 소금에 절인 양의 눈알을 넣은 토마토 주스를 마신다.
- 싱가포르: 인삼 달인 물을 마신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 사전」 중에서